

규정명	공시 정보 관리 규정			REV	1	보안등급	대외비
문서번호	GW-경영관리-007	제/개정일자	2025년 09월 01일 제정			보존기간	영구

공시 정보 관리 규정

(주)그리드위즈

[illegible]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그리드위즈(이하 "회사"라 함)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 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및 적용유예)

- ①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관련 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회사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증권시장에 회사의 주권을 상장하기 전에는 이 규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① "공시정보"라 함은 회사의 경영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이하 "발행공시 규정"이라 한다), 거래소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 ② "공시서류"라 함은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제출한 신고 및 보고서류(전자문서 포함)와 이에 첨부된 서류를 말한다.
- ③ "공시통제제도"라 함은 공시정보를 회사 내부의 관련 조직에서 일정한 통제 절차에 따라 관리해 나가는 제반 업무활동을 말한다.
- ④ "공시통제조직"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해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 공시책임자, 공시담당부서 및 공시정보의 생성과 관련된 사업부서를 의미한다.
- ⑤ "공시책임자"라 함은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회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공시규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공시책임자로 거래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 ⑥ "공시담당부서"라 함은 회사의 업무 및 직제 규정에 의거 회사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공시담당부서에는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된 "공시담

당자" 2인 이상이 소속되어야 한다.

⑦ "사업부서"라 함은 회사의 공시정보 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⑧ "정기공시"라 함은 회사의 사업, 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 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 제159조, 제160조, 제165조, 영 제168조, 제170조, 발행공시규정 제4-3조, 공시규정 제21조에 따라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⑨ "수시공시"라 함은 주요 경영사항의 공시로서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 또는 결정 내용 등을 공시규정 제7조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 또는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⑩ "공정공시"라 함은 회사가 관련 법규상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나 공시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보 등을 특정인에게 선별제공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15조 및 제16조와 거래소의 공정공시 운영기준에 따라 당해 정보를 일반투자자가 동시에(또는 특정인에게 선별제공 전까지) 알 수 있도록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⑪ "조회공시"라 함은 회사와 관련한 품문 및 보도의 사실 여부 확인이나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공시규정 제12조에 의거 거래소로부터 요청받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⑫ "자율공시"라 함은 회사가 제9항의 수시공시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 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28조 및 동 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⑬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라 함은 관련 법규상 증권의 모집, 매출이나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회사의 조직변경이나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119조, 제121조 내지 제123조, 제130조, 제161조, 영 제120조 내지 제122조, 제137조, 제171조, 발행공시규정 제2-4조, 제2-6조, 제2-14조, 제2-17조, 제4-5조, 제5-8조 내지 제5-10조, 제5-15조에 따라 금융위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⑭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2장 공시통제조직의 기본적 권한과 책임

제4조 (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② 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정책수립
2.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권한, 책임, 보고체계의 수립
3. 공시통제제도의 운영실태 최종 점검 및 운영성과의 최종 평가
4. 공시통제제도 관련 제 규정의 승인
5.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

제5조 (공시책임자)

① 공시책임자는 공시규정 제2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대표이사가 지명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정보 및 공시서류(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검토, 승인, 시행에 관한 업무
2. 임직원의 공시 관련 법규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관련 교육 실시, 지침의 마련 등)
3. 공시위험요인에 대한 식별과 대처방안 수립, 실행
4.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5. 관련 법규에서 공시하도록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시 여부 및 범위의 결정
6. 공시담당부서의 지휘 및 감독
7. 공시업무에 관련된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계획 수립, 시행
8.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 지침 등의 승인
9. 기타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공시사항과 관련된 각종 장부 및 기록에 대한 제출 요구 및 열람권
2. 회계 또는 감사 담당 부서, 기타 공시정보 생성 및 공시서류 작성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임직원에게 대한 의견 청취권

- 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담당 임원 또는 감사와 협의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⑤ 공시 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의무교육을 이수한다.

제6조 (공시담당부서)

- ① 대표이사는 공시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포함하여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중 2인은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공시담당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 ② 공시담당부서는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각종 공시정보의 수집 및 검토
 - 2. 공시서류의 작성 및 공시실행
 - 3. 연간 공시업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현황 점검
 - 4. 공시 관련 법규의 제. 개정내용에 대한 수시점검 등 법규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 5.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공시위험의 식별, 점검, 평가, 관리
 - 6. 기타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공시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의무교육을 이수한다.

제7조 (사업부서)

- ① 각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에 적시에 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 1. 공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2.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공시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 3. 이미 공시된 사항의 취소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4. 기타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의 요구를 받은 경우
- ② 전항의 공시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관련 내용과 필요한 증빙 및 참고자료 등에 관한 사본을 문서로 공시담당부서로 전달하고 이에 관한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

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 외의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되 사후에 관련 내용의 사본을 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제7조의 2 (종속회사의 통지의무)

- ① 종속회사는 종속회사의 수시공시 대상의 구체적인 금액 및 범위를 별지2「종속회사 수시공시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기준 및 범위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다.
- ③ 모든 종속회사의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모회사의 공시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지연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회사 규정에 따른다.

제3장 공시통제활동과 운영

제1절 정기공시

제8조 (정기공시)

회사는 정기공시 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부서)

- ① 각 사업부서의 장은 연간 공시업무계획에 의거 정기공시사항의 공시를 위하여 당해 부서에 분장된 업무 및 공시 일정 등을 확인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월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시담당부서로 점검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 ② 각 사업부서의 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를 위하여 당해 사업부서에 분장된 업무를 수행하여, 이를 연간 공시업무계획에서 정하는 제출기한까지 공시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각 사업부서의 장은 업무추진의 지연 등으로 전항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시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시담당부서)

- ① 공시담당부서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를 위하여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사업부서별 업무분장을 포함한 연간 공시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문서로 각 사업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사업부서의 점검내용 및 통지내용에 의거 법정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각 사업부서에서 전달받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서식 및 기재 방법에 따라 정기공시 서류를 작성하여, 연간 공시업무계획에서 정하는 제출기한까지 공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책임자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법정 제출기한 내에 공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대표이사 등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시책임자)

- ① 공시책임자는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에 필요한 업무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법정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공시책임자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기공시 서류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당해 정기공시 서류를 통해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공시를 이행하기 전에 정기공시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12조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로부터 보고받은 정기공시 서류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상 필요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시내용의 사후점검)

- ① 정기공시 서류 작성에 관련된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 후 즉시 당해 공시내용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점검 결과 오류가 발견된 경우 즉시 정정하며, 원칙적으로 공시일 당일 내 완료하여야 한다.

공시담당부서는 사후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를 문서화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수시공시

제14조 (수시공시)

회사는 수시공시 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수시공시의 금액기준)

- ① 회사는 수시공시 대상의 구체적인 금액 및 범위를 별지1 「수시공시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기준 및 범위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다.
- ③ 모든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공시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지연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회사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사업부서)

- ① 각 사업부서는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미 수시공시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이에 관한 정보를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 ② 사업부서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1항의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공시담당부서)

- ① 공시담당부서는 사업부서로부터 수시공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경우 즉시 당해 정보가 공시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부서에 정보의 보완이나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검토 결과 수시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에 대한 검토내용과 수시공시 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관련 법규에서 정한 공시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책임자의 부재 등 사전에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검토 결과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당해 정보에 대한 검토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공시책임자)

① 공시책임자는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 등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공시 여부에 대해 승인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수시공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공시내용의 사후점검)

제13조의 규정은 정기공시, 수시공시 및 자율공시를 포함한 모든 공시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절 공정공시

제19조 (공정공시)

회사는 공정공시 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정공시대상정보의 우회제공의 금지)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공시규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는 공정공시사항을 각종 비율 및 증감 규모 등을 통하여 공시 전에 우회적으로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공시규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유의사항)

- ① 공정공시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투자자의 문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당해 공정공시 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사업부서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거래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공시 요약내용과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여 공시하고 당해 요약내용과 원문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2조 (준용)

제13조, 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은 공정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중 "정기공시 서류"는 "공정공시 서류"로, 제15조 또는 제17조 중 "수시공시"는 "공정공시"로 본다.

제4절 조회공시

제23조 (조회공시)

회사는 조회공시 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공시담당부서)

- ① 공시담당부서장은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 및 중요정보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조회공시에 응하여야 한다.
-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사실 여부나 중요정보의 유무 확인을 위해 각 사업부서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조회공시를 요구받아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이하 '미확정 공시'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 내용 또는 진척 상황을 파악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미확정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공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재공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공시 시한을 명시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25조 (준용)

제13조, 제16조 제2항 단서 및 제17조의 규정은 조회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중 "정기공시"는 "조회공시"로, 제17조 중 "수시공시"는 "조회공시"로, 제17조 제1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는 "제1항의 확인 내용과 공시서류"로 본다.

제5절 자율공시

제26조 (자율공시)

회사는 자율공시 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7조 (자율공시사항의 판단 및 정보의 수집)

- ① 공시책임자는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공시담당부서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공시서류의 작성을 지시할 수 있다.
-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에 따른 공시책임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사업부서의 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즉시 이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문서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 ④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전항의 통지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 2 (자율공시의 금액기준)

- ① 회사는 수시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거래 또는 의사결정의 금액이 수시공시 금액기준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공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금액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공시책임자가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또는 투자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거래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자율공시할 수 있다.
- ③ 구체적인 금액기준은 관련 법령 및 공시 규정에서 정하는 수시공시 금액기준을 준용한다.

제28조 (준용)

제13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자율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중 “정기공시”는 “자율공시”로, 제16조 제1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공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로, 동조 제2항 중 “수시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동조 제3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보며, 제16조 및 제17조 중 “수시공시”는 “자율공시”로 본다.

제6절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제29조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회사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업무추진계획의 수립)

공시담당부서장은 발행공시 및 법 제161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주요사항보고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사업부서별 업무분장을 포함한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각 사업부서에 문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31조 (준용)

- ① 제9조 제3항, 제10조 제2항 내지 제3항,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발행공시 및 전 조의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 제3항 중 “연간공시업무계획”은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업무추진계획”으로, 제10조 제3항, 제11조 내지 제13조 중 “정기공시 서류”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로 본다.
- ② 법 제1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 내지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시공시” 및 “수시공시 서류”는 “주요사항보고”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로 본다.

제4장 정보 및 의사소통

제32조 (정보의 수집, 유지, 관리)

- ① 각각의 공시통제조직은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당업무에 관련되는 회사 내, 외부의 필요한 정보와 근거자료를 수집,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전항의 정보를 수집, 유지, 관리하고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시스템을 마련하거나 필요한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
- ③ 공시 관련 문서 및 증빙은 상법 제33조에 따라 중요서류는 10년, 전표 등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3조 (의사소통)

대표이사는 공시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각 공시통제조직 및 임, 직원간의 원활한 정보소교환 및 의사소통을 위해 보고체계의 수립 등 필요한 의사소통체계가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공시위험의 평가와 관리

제34조 (공시위험의 관리)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및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공시위험이 적시에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재무정보 오류: 회계처리상의 실수나 담당자 간 의사소통의 불일치 등에 의해 야기되는 실제 재무상태와 공시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2. 서식 기재의 미비, 기재오류: 기재요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 오타 등으로 공시 관련 서식상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기재 누락 또는 오류로 인한 공시위험
3. 공시내용의 불명확성, 불충분성, 부정확성: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어, 약어의 사용,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 실제 발생 사실과 공시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공

시위험

4. 관련 법규상의 공시기한 준수 의무의 불이행: 정보전달의 지연, 결재의 지연, 공시기한에 대한 오인 등으로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공시위험
5. 공시사항의 누락. 은폐. 축소: 공시의무사항을 이해하지 못한 공시 누락이나, 회사에 부정적인 정보 등에 대한 은폐. 축소로 인한 공시위험
6. 예측정보의 공시에 따른 위험: 예측정보가 합리적 근거나 가정에 기초하지 않았거나 고의의 허위 기재,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7. 미공개 정보의 유출: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임직원에게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등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유출되는 경우의 공시위험
8. 공시제도의 변경에 따른 위험: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정부정책의 변경, 회사가 속해 있는 거래소시장의 변경, 관련 감독기관 및 시장운영기관 등의 담당자 또는 실무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시위험
9. 공시담당자의 변경: 공시담당자의 변경에 따른 정보승계의 단절, 공시의무 이행의 계속성 상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시위험
10. 기타 공시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위험

제35조 (사업부서)

- ① 각 사업부서는 공시 관련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공시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시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② 각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업부서와 관련된 공시위험을 목록화하여 월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 (공시담당부서)

- ① 공시담당부서는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시위험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위험요소들을 목록화하고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위험의 발생 결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한 공시위험을 별도로 분류하여 일별, 월별 점검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제6장 모니터링

제1절 일상적 모니터링

제37조 (일상적 모니터링)

- ① 각 사업부서의 장 및 공시담당부서장과 공시책임자는 일상적 모니터링을 통해 공시 관련 업무가 공시통제제도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일상적 모니터링을 위해 문서의 결재, 참고자료의 제출 요구, 공시정보와 관련된 직원과의 면담, 회계 또는 감사업무담당부서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절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제38조 (주체 및 시기)

- ①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사업보고서 제출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 (절차)

- ① 각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자체 평가내용을 포함한 부서별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전조 제2항의 기간 내에서 공시책임자가 정하는 날까지 공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시책임자는 각 사업부서와 공시담당부서장이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회사의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책임자는 감사(감사위원회),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 ③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가 보고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회사의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제40조 (방법 및 고려사항)

- ①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정보의 생성, 전달 등 공시 절차에 관여한 자와의 면담, 관련 문서 검토, 외부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이전에 수행되었던 점검과 평가 이후 공시통제제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2. 회사가 설계, 운영하고 있는 공시통제제도가 지속적이며 정확한 정보의 생산 및 공시위험의 감소에 기여하는지 여부
 - 3. 회사의 공시통제제도에 적법하지 않거나 결함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 4. 재무 및 비재무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가 충분한지 여부
 - 5. 회사의 공시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6. 회사의 공시통제과정에서 모든 관여자가 그들의 책임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 7. 이전에 발생한 공시위험 및 주요한 공시위험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8. 이전에 발생한 위험이 기존의 공시통제제도를 통해 회피 가능하였는지 여부
- ③ 공시책임자는 전항 각호의 사항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통하여 별도의 점검표 등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1조 (평가 결과의 활용)

- ①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나타난 통제상의 취약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공시책임자는 전항의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후에 점검하여야 한다.

제7장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금지

제42조 (일반원칙)

임직원은 법 제1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이하 '미공개 중요정보'라 한다)를 법 제1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증권 등(이하 '특정증권 등'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 (임직원에 의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

- ① 임직원은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증권 등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정을 사전에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통보를 받은 공시책임자는 당해 매매 그 밖의 거래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여겨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임직원은 특정증권 등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시책임자에게 당해 거래내역(특정증권 등의 종류, 매매 수량, 거래일자)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 (미공개 중요정보의 관리)

- ①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미공개 중요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미공개 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허용된 임직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2. 임직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엘리베이터, 복도 등 타인이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3. 미공개 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공개적인 장소에 비치되어서는 안 되며, 문서의 폐기 시에는 분쇄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문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폐기되어야 한다.
 4. 임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외부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5. 미공개 중요정보와 관련한 팩스,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한 문서의 전자송신은 보안이 보장된 상태에서야만 수행되어야 한다.
 6. 미공개 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불필요한 복사는 가급적 피하고 문서는 회의실 또는 업무 관련 장소에서 신속히 정리되어야 한다.

7. 미공개 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사본의 여분은 분쇄 등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파기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거래의 상대방, 법률대리인, 외부감사인 등과 업무상 불가피하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 등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공유토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시담당부서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 항의 통지를 받은 공시담당부서장은 당해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공정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 (계열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임

직원에 대한 회사의 계열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제42조 내지 제44조를 준용한다.

제46조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등)

① 임원과 다음 각호의 직원은 특정증권 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13항의 주요사항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수립, 변경, 추진, 공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2. 재무, 회계, 기획, 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회사의 주주(주권 외에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회사가 단기매매차익거래를 한 임직원에게 그 이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는 전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직원에게 대한 재판상의 청구를 포함하여 당해 이익을 반환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공시책임자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다음 각호의 사항이 지체없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임원별·직원별 또는 주요주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증선위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
4.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계획
5.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에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회사가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제8장 기타의 공시통제

제1절 보도자료의 배포 등 언론과의 접촉

제47조 (보도자료의 배포)

- ① 각 사업부서의 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배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당해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제19조의 공정공시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공정공시 하여야 한다.
- ③ 외국어 보도자료 또는 공시는 국문본과 불일치 시 국문본을 우선으로 한다.

제48조 (의견 청취)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9조 (보도 내용의 사후점검)

보도자료를 생성시킨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보도자료의 배포 후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 (언론사의 취재 등)

- ①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서 회사에 취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취재의 목적과 내용 등을 검토하여 취재에 응하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
-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취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언론사 등으로부터 미리 질의내용을 접수하거나 예상 문답 내용을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취재 등에 응하는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의 보도 내용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시장 풍문 등

제51조 (시장 풍문)

- ① 회사는 시장 풍문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시장 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련 정보가 공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시장 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2조 (정보제공 요구)

- 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전 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시책임자는 제공되는 정보가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 담당 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거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경우에는 당해 정보제공을 요구한 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동시에(또는 정보제공 전까지)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3조 (기업설명회)

- ① 투자설명회, 애널리스트 간담회 등 기업설명회(이하 "기업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기업설명회에서 배포될 자료와 예상 문답 내용을 문서로 공시책임자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에게 기업설명회의 개최 일시, 장소, 대상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공시담당부서장은 기업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시를 개최 전까지 실행하여야 한다.
-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기업설명회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의 제공이 있는 경우 당해 정보가 지체없이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4조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 ① 각 사업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회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당해 정보를 공시담당부서로 전달하고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47조 제2항, 제48조, 제49조는 본조에서 준용한다. 이 경우 "보도자료"와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로 본다.

제9장 보 칙

제55조(교육)

- ① 공시책임자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공시통제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연간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정보의 발생빈도가 큰 사업부서와 공시담당부서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교육 또는 연수가 이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매년 1회 이상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 직무 재배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6조 (벌칙)

회사는 이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게 대하여 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벌칙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다.

부 칙<2022.02.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9.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 수시공시기준

당 일 ■ 익 일 ○	수시공시기준 공시의무사항 A: 직전년도 연결기준 매출액 B: 직전년도 연결기준 자기자본 C: 직전년도 연결기준 자산총계	백 분 율	관련 조항등
■	A 의 10%이상 영업의 일부 or 전부 정지/정지에 대한 행정처분	10%	영업. 생산 활동
■	A 의 10%이상 차지하는 거래처와 거래중단	10%	
○	A 의 10%이상 단일판매계약/공급계약 체결.해지한때	10%	
■	A 의 10%이상 제품의 수거/파기 결정한때	10%	
■	A 의 10%이상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폐업된 때	10%	
■	A 가 100 억미만이거나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확인		결산
■	A 와 영업손익/당기순손익등이 직전사업연도 대비 30%이상 증가 및 감소	30%	
■	B 의 10%이상 신규 시설투자, 세척에서 정하는 시설외 투자, 증설/공장신설 결정	10%	투자 활동
■	B 의 10%이상의 출자 혹은 출자지분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을때 (6 월이내 제 3 자배정 취득자 포함),	10%	
○	B 의 10%이상 출자(채무자)한 경우로서 비상장 주식의 경우	10%	
■	B 의 10%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 결정이 있을때 (기존 차입금 상환은 제외)	10%	채권. 채무
■	B 의 10%이상의 채무를 면제/인수하기로 결정한때.	10%	
■	B 의 10%이상의 담보제공(타인담보포함)/채무보증에 관한 결정이 있을때.	10%	
○	B 의 10%이상의 담보제공(타인담보포함)/채무보증에 관한 결정이 있을때	10%	
■	B 의 10%이상의 타인에 대한 선급.금전가지급/금전혹은증권 대여 (6 월이내 제 3 자배정 취득자포함)	10%	
■	B 의 10%이상의 발행한 사채 원리금 지급이행 못한때 (누계기준-기 신고분 제외)	10%	
■	B 의 10%이상의 금융기관 대출 원리금 지급이행 못한때 (누계기준-기 신고분 제외)	10%	
■	B 의 5%이상의 벌금/과태료/과징금/추징금등이 부과된 사실 확인때	5%	손익
■	B 의 5%이상의 임직원 횡령.배임혐의 확인/횡령금액 상환 진행확인 혹은 그사실의 확인	5%	
○	B 의 10%이상 파생상품거래로 손실이 발생한때 (누계기준-기 신고분 제외)	10%	
■	B 의 50%이상의 매출채권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의 사실을 확인한 때 (별도재무제표 기준)	50%	
■	B 의 5%이상의 청구 소송(비송사건 포함)	5%	기업경 영활동

■	C 의 10%이상의 유형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10%	투자 활동
■	C 의 10%이상 천재지변 또는 화재에 의한 재해발생	10%	손익
■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결산
■	자본잠식률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 억원 미만 (최근 반기말포함)		
■	최근 반기 매출액 7 억원 미만 또는 최근분기 매출액 3 억미만 (상장규정시행세칙 제 61 조제 1 항제 4 호라목 해당시 제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검토와 관련하여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거나 범위제한 또는 검토의견 표명되지 아니한 때.		
■	증자/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을때		
■	주식소각에 관한 결정이 있을때		재무 구조
■	자기주식 취득/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을때		
■	주권/유가증권 예탁증서의 분할/병합에 관한 결정이 있을때		
■	상법 제 329 조 액면주식→무액면주식전환/무액면주식→액면주식 전환 결정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또는 주식예탁증서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을때		
■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상황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법인이 상장을 폐지하기로 결정한때		
■	발행한 어음의 위.변조된 사실을 확인한 때		
○	해외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한 결정이 있을때/해당 주권등을 상장한 때		
○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후 당해국 증권감독기관 또는 증권거래소등에 기업내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신고/공시결정		
○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후 당해국 증권감독기관 또는 증권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정지/상장폐지 조치를 받을때		
○	해당국 증권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 받은 때		
■	임원등의 가장납입협의를 확인한 때, 가장납입금액 상환 등의 진행사항이 확인되거나 가장납입협약이 사실로 확인된 때		손익
■	상장규정 제 53 조 제 1 항 제 1 호부터 제 4 호 나목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		결산
■	상장규정 제 54 조 제 1 항 제 3 호부터 제 4 호까지, 제 8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 56 조 제 1 항 제 15 호부터 제 18 호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		
■	주식배당에 관한 결의를 한때 (기준일 10 일 전까지 신고)		
■	현금.현물배당에 관한 결의를 한때/ 분기.중간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을 결정한때 (정관에 배당기준일 정한 경우 제외)		
■	코스닥상장법인/임.직원이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고발/통보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때		

■	임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의결된 사실이 확인된 때		
■	최대주주/대표이사/계열회사/주요주주가 변경된때		기업경 영활동
■	자회사가 새로이 편입 또는 탈퇴된 때		
■	상법 제 3 편제 4 장제 2 절제 2 관 및 제 3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결정이 있을때		
■	영업양수도,합병,간이합병,소규모합병,회사의분할합병,물적분할에 관한 결정이나 이사회결의가 있을 때		
■	최대주주변경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임원의 임면,정관변경등 경영권 변경 목적의 계약 또는 준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한때		
■	최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 등 (담보권이 실행될 경우 최대주주 변경될수 있는 경우에 한함)		
■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당좌거래 정지.금지된 때		
■	회생절차개시 신청(기각),결정(취소),회생계획 인가(불인가), 회생절차 종결신청(결정),폐지신청(결정),파산신청(기각),파산선고에 해당하는 때.		
■	상법 517 조/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때		
■	거래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의 경영관리를 개시/중단/해제한 사실을 확인한때		
○	주채권은행.금융채권자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때		
■	상장 또는 상장대상 유가증권의 발행에 대한 효력/권리변경/위조/변조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선임/해임을 위한 주주총회소집 허가 신청/경영권분쟁 소송,주주총회결의 무효.취소의 소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		
■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있을 때		

[별지2] - 종속회사 수시공시기준

당 일 ■ 익 일 ○	종속회사 공시의무사항 A: 직전년도 연결기준 매출액 B: 직전년도 연결기준 자기자본 C: 직전년도 연결기준 자산총계	백분 율	관련 조항 등
○	종속회사의 유상,무상증자 금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B 의 10% 이상	10%	재무 구조
○	종속회사의 유상증자 금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B 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0%	
○	종속회사의 감자 금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B 의 10% 이상에 해당	10%	
○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의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국내 또는 해외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		
○	종속회사의 무상증자 금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B 의 10%이상	10%	
○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C 의 10%이상 유형자산의 처분	10%	투자 활동
○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C 의 10%이상 유형자산의 취득	10%	
○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의 C 의 10% 이상의 타법인 발행 주식 및 출자증권의 처분에 관한 때 다만,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 38 조에 의한 금융기관의 단기매매증권의 처분은 제외	10%	
○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의 C 의 10% 이상의 타법인 발행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에 관한 때	10%	
■	지배회사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 6 조의 2 에 따른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을 신고할 때		
■	주요종속회사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된 때		기업 경영 활동
○	종속회사에 제기된 소송 등에 대한 소송관련 청구금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C 의 10% 이상, 해당 법인의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 등이 제기된 때	10%	
■	종속회사가 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C 의 10% 이상 종속회사가 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A 의 10% 이상	10%	
■	종속회사가 양수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C 의 10% 이상 종속회사가 양수하려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A 의 10% 이상 종속회사가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부채총액의 10% 이상	10%	
○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A 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종속회사의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을 때	10%	

■	주요종속회사가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	주요종속회사가 상법 제 3 편제 4 장제 2 절제 2 관 또는 제 3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결정	
○	주요종속회사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관리절차개시의 결정사실을 확인한 때	
○	주요종속회사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 12 조에 따른 채권은행 등에 의한 관리절차중단의 결정사실을 확인한 때	
■	주요종속회사가 상법 제 517 조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의 발생 또는 결정한 때	
○	주요종속회사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또는 주권에 기초한 증권예탁증권에 대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매매거래정지 등 조치를 받은 때	
○	주요종속회사가 해외증권시장에 주권 또는 주권에 기초한 증권예탁증권을 상장을 결정한 때	
○	주요종속회사가 해외 증권시장에 주권 또는 주권에 기초한 증권예탁증권이 상장된 때	
○	주요종속회사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한 주권 또는 주권에 기초한 증권예탁증권의 상장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거나 해당 거래소로부터 폐지조치를 받은 때	
○	주요종속회사가 해외 증권시장에서 주권 또는 주권에 기초한 증권예탁증권을 상장 폐지한 때	
■	주요종속회사가 「상법」 제 530 조의 2, 제 530 조의 12 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	주요종속회사가 「상법」 제 530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합병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	주요종속회사가「상법」 제 522 조, 제 527 조의 2, 제 527 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합병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	주요종속회사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34 조, 제 35 조 및 제 293 조의 4 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포함) 개시의 신청(외국법인등의 경우 기업회생과 유사한 절차개시의 신청을 포함)을 한 때	